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3239호
2. 발의자 : 우형찬 의원
3. 발의일자 : 2025. 10. 20.
4. 회부일자 : 2025. 10. 23.

II .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입학지원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과오납에 한하여 입학선발수수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학지원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존재하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입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III . 주요내용

1.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입학선발수수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3.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입법예고(2025. 10. 28. ~ 11. 1.) 결과 :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0월 20일 우형찬 의원에 의해 의안 번호 제3239호로 발의되어 2025년 10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에서 입학지원자에게 징수하는 입학선발수수료의 반환 조건에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 사립 초등학교는 1) 입학지원자에게 학생 추첨 및 입학설명회, 홍보 자료 제작·배포를 비롯해 입학전형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2) 위탁 접수 대행 수수료 3) 등을 입학선발수수료의 형태로 징수합니다.
 - 참고로 2026학년도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선발수수료(전형료)는 교당 3만원이며,⁴⁾ 관내 사립초등학교는 전년도(2025학년도)에 신입생 모집 전형 시행을 통해 학교별로 211만원에서 4,971만원까지⁵⁾ 전형료 수입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1) 조례는 입학선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을 사립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정하고 있음. 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모든 사립유치원은 조례 제2조 단서조항을 근거로 입학선발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음.

「서울특별시 사립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징수금액) 선발수수료는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학교(유치원)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선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2) 전민희 기자(2022.12.21.), [단독]사립초, 코로나에 경쟁률 급등…전형료 수입 5배 늘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7407> (검색일 2025-12-09)

3) 시의원(박상혁 위원장) 요구자료 제출(2077번)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8704, 2025.11.13.) [붙임 3] 참조

4) 2026학년도 서울특별시 국·사립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요강(2025.11.3. 게시)

https://www.kspesa.com/service/brd/brd_det.do?pBoardCd=NOTI_A&pBoardNum=9&pageIndex=1&pageSize=10&pSearchType=1&pSearchText=&pMid= (검색일 2025-12-09)

5) 시의원(박상혁 위원장) 요구자료 제출(2077번)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18704, 2025.11.13.) [붙임 3] 참조

- 그러나 현행 조례는 입학지원자가 사립초등학교에 납부한 입학선발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한하여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학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 특히, 현행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제도에서 입학지원자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사고 등 본인의 과실이 아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수수료 반환 규정이 부재하여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즉, 현행 조례는 입학선발수수료 반환 의무 발생 사유를 “과오납”으로 한정함으로써 사립초등학교 등의 적극적인 수수료 반환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바, 적극행정 유도와 주민 권리 보호 관점에서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더욱이 사립초등학교의 입학선발수수료 반환 규정은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에⁶⁾ 따라 징수하는 특성화 중학교 등의 입학전형료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⁷⁾ 근거하여 징수하는 대학 입학전형료와 비교하더라도 다소 과도하게 반환 사유가 제한적입니다.

6)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제5조(전형료 반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입학전형 기관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7)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입학전형료) ② 법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입학전형료의 반환 사유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과오납 이외에 입학지원자의 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전형료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학전형 운영의 합리성 향상과 입학지원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 구체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학전형이 추진되는 기간 중 ① 학교가 천재지변으로 운영이 불가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경우나 ② 학교의 귀책 사유로 입학전형 시행이 어려워진 경우, ③ 학생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입학이 어려워진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 입학지원자에게 입학선발수수료를 환불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더 나아가 안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은 입학선발수수료 환급 여부에 관해 사립초등학교가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적극적으로 수수료 반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 덧붙여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에 관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⁸⁾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 초등학교 및 유치원 입학선발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지수(2180-8264)

8)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3602, 2025.10.30.)